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26
----------	-------

발의연월일 : 2026. 3. 12.

발 의 자 : 이광희 · 박해철 · 진성준
박지원 · 윤건영 · 이용선
김문수 · 양부남 · 채현일
김 윤 · 이주희 · 김우영
박정현 · 김태년 · 문진석
복기왕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계속공사는 수년에 걸친 전체 공사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만, 사업예산은 각 연도별로 별도 심의·의결하는 공사로서, 전체 공사 예산의 확보 없이 첫째 예산만 확보되면 착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공공계약에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특성상 인·허가 및 토지보상 지연,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 문화재 발굴 등 계약상대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총공사기간의 연장 사례가 빈번하지만, 총공사기간이 아무리 연장되어도 차수별 계약의 횟수만 늘어나며 연장된 기간 동안 현장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간접

공사비는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으로, 공공계약에 있어서의 대표적 불공정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일반적인 계약기간의 변경과 더불어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를 시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통제범위를 벗어난”을 “책임 없는”으로, “계약기간”을 “계약기간(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총계약기간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생 략)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현행과 같 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계약상대자의 <u>통제범위를 벗어난</u>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u>계약기간</u> 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 ----- ----- -----책임 없는 -----계약 기간(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총계약 기간을 포함한다)----- ----- ----- ----- ----- -----.